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11.22.(금) 조간	배포	2024.11.21.(목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외환감독국 외환검사기획팀	책임자	팀 장	손성기	(02-3145-7938)
		담당자	검사역	김재연	(02-3145-7947)

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크게 감축하겠습니다.

-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위반유형別 「對고객 핵심 설명서」를 제작하여 **순은행**에 배포, **고객 안내**를 크게 강화

◆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**법상** 정해진 신고·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**과태료**, **수사기관 통보**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

- 그간 보도자료 배포,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**對국민 홍보활동**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, **예방 효과**가 저조하였습니다.

◆ 이에 금번에는 **홍보대상**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**은행 지점**으로 **변경**하고,

- 주로 발생하는 위반유형別로 「對고객 핵심 설명서」를 **제작·배포**하고, 지점 창구에서 “對고객 핵심설명서”를 **활용**하여 금융소비자에게 **안내**를 강화하는 “**3단계**\* **위반 감축방안**”을 **마련**하였습니다.

\* **①단계** (신고대상 여부 확인) **지점 창구**에서 **해외송금목적**을 정확히 **확인**

**②단계** (변경/사후보고 이행방법 안내) **지점 창구**에서 **신고서 접수시**, **변경/사후보고 이행방법**을 명확하게 **안내**

**③단계** (상호체크) **본·지점**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**주기적**으로 **점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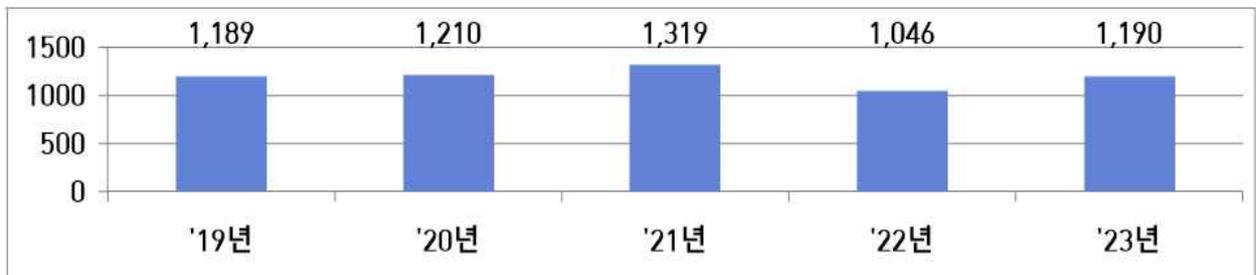
- 아울러, 금번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**은행 간담회**를 **개최**(11.21일)하여 **이행**을 독려하였습니다.

◆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**외국환거래제도**에 대한 **이해 부족**으로 발생하는 **행정처분**(과태료, 수사기관 통보 등)이 **최소화**될 수 있도록 **금융소비자 보호**에 **더욱 노력**하겠습니다.

## I 추진 배경

-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고의/중과실 보다는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·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
  -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(보도자료 배포, 책자 발간 및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) 등을 지속하여 왔으나,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였음

연도별 위반접수 건수 (단위: 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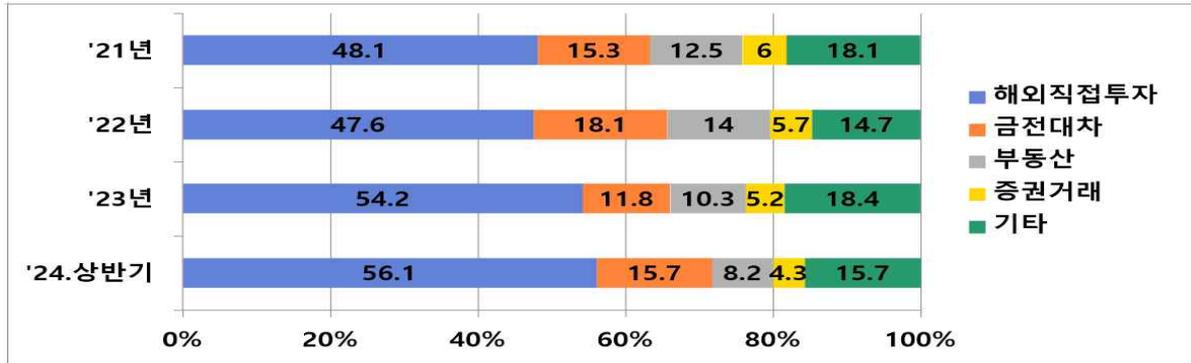
-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유형이 정형화되고 위반시기도 집중화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
  - ('23년중 위반유형) 해외직접투자(426건, 54.2%), 금전대차(93건, 11.8%), 부동산(81건, 10.3%), 증권거래(41건, 5.2%) 등이 81.5%를 차지
  - ('23년중 위반시기) 최초신고(397건, 50.5%), 변경신고·보고(313건, 39.8%) 시점에 발생한 위반이 90.3%를 차지

'23년 세부 위반내역 (단위: 건)

구분	해외직접투자	금전대차	부동산	증권거래	기타	합계
최초신고	166	47	59	30	95	397(50.5%)
변경신고·보고	224	46	8	11	24	313(39.8%)
사후보고	36	-	14	-	-	50(6.4%)
지급절차	-	-	-	-	26	26(3.3%)
합계	426(54.2%)	93(11.8%)	81(10.3%)	41(5.2%)	145(18.5%)	786(100.0%)

**참고** 최근 4년간('21년~'24.상반기) 외국환거래 당사자 위반유형

□ '21년~'24.상반기중 위반유형도 해외직접투자, 금전대차, 부동산, 증권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**매년 유사**한 상황



⇒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**해외직접투자, 금전대차, 부동산, 증권거래**의 **최초·변경신고(보고)** 사항을 **중심**으로 「**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**」를 마련

□ 한편, 위반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, **은행 지점**에서 **금융소비자**에게 **충실히 안내**만 하더라도 위반사항의 상당부분 **예방 가능**

○ '23년중 금융감독원에 위규접수된 총 1,190건 중 1,170건(98.3%)이 은행을 통해 접수

⇒ **홍보대상**을 금융소비자와 점점에 있는 **은행 지점 실무자로 변경**

※ **금융회사**가 직접 외국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**위반 발생**

○ '21년~'24.상반기 중 총 101건을 조치하였으며, **금투권역\***이 **87.1%**로 대부분을 차지[**자산운용사**(58건, 57.4%), **집합투자기구**(25건, 24.8%), **증권사**(5건, 5.0%), **은행**(5건, 5.0%), **여전사**(3건, 3.0%) 順]

\* 금투권역에 대한 설명회('24.11.21. 오전 10시)를 개최하여, 자체점검 등을 통한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유도

## II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 감축방안 도입

- 「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\*」를 **쏘은행**에 배포하고, 이를 활용한 “3단계 위반 감축방안”을 마련

☞ 「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」의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

- **1단계 (신고대상 여부 확인) 지점 창구**에서 **해외송금목적**을 정확히 확인하여 **신고대상 여부 확인**

\* (세부이행단계)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업무 취급시 “對고객 핵심설명서”를 활용하여 ①송금목적을 확인 ⇒ ②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 확인

구분	사전신고 대상
해외직접투자	①외국법인에 대해 10% 이상의 지분을 취득, ②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등
부동산	①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, ②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, ③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등
금전대차	①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, ②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등
증권거래	거주자 및 비거주자간 증권 양수도 등

- **2단계 (변경/사후보고 이행방법 안내) 지점 창구**에서 **신고서 접수시, 변경/사후보고 이행방법**을 명확히 안내

\* (세부이행단계) 지점 창구에서 ①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신고서를 접수하고, ②“對고객 핵심설명서”를 활용하여 변경보고(신고) 및 사후보고 이행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

구분	변경보고(신고) 대상	사후보고 대상
해외직접투자	①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의 <b>자회사/손자회사 설립</b> , ② <b>투자금액/소재지/상호</b> 등 변경, ③ <b>대부투자 후 1년 이내 회수</b> 하는 경우 등	① <b>송금(투자)보고</b> , ② <b>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</b> , ③ <b>청산보고</b> 등
부동산	① <b>취득자금 원천</b> 변경, ② <b>다른 부동산을 취득</b> 하는 경우 등	① <b>해외부동산 취득보고</b> , ② <b>해외부동산 처분</b> 보고 등
금전대차	<b>대출기간/금리/상환방법/거래당사자</b> 변경 등	
증권거래	① <b>발행신고서상의 금리/만기/상환방법</b> 변경, ② <b>취득신고서상의 수량/액면가액</b> 변경 등	

- **3단계 (상호체크) 본·지점**에서 **사후보고**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

- 금번에 마련한 “3단계 위반 감축방안”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
- ‘24.11.21.(목) 은행권역 간담회’를 개최하여, 「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」를 배포하고, 이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
- 향후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하여,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

#### 은행권 외국환업무 관련 실무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4.11.21.(목) 오후 2시
- ☑ 장 소 :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
- ☑ 참석자 : 쏘은행 본/지점 외국환업무 담당자 등

### III 기대 효과

- 쏘은행 지점에서 「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」를 활용한 “3단계 위반 감축방안”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,
-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되어 불이익한 행정처분(과태료 등)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



#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 설명서



## 해외직접투자 관련 핵심 유의사항

### ▷ 사전신고 대상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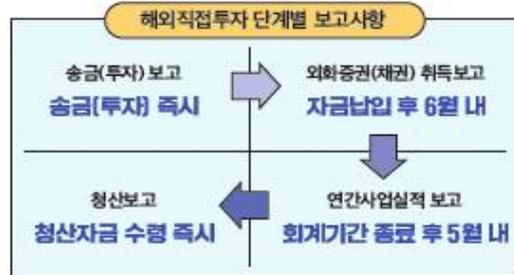
- 지분투자** ① 외국법인에 대해 10% 이상의 지분을 취득, ②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
- 대부투자**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1년 이상의 금전대여  
\*(관련법규)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, 외국환거래규정 제9-5조

### ▷ 변경보고 대상\*

- ① 해외직접투자한 법인의 자회사/손자회사 설립 및 투자금액 변경
  - ② 해외직접투자 신고·보고인의 상호/대표자/소재지 등 변경
  - ③ 해외직접투자 내용(현지법인명/소재지/투자액/투자비율 등) 변경
  - ④ 대부투자 후 1년 이내에 대여금을 회수
  - ⑤ 대부투자의 만기일 연장 등
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9-9조 제1항 제8호

### ▷ 사후보고 대상\*

- ① 송금(투자)보고, ②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, ③ 청산보고 등
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9-9조 제1항



### ▷ 유의사항

원칙적으로 해외직접투자(지분투자/대부투자)에 해당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사전신고 필요

## 국내외 부동산 취득 관련 핵심 유의사항

### ▷ 사전신고 대상\*

- 원칙적으로
- ①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또는 임차(임차보증금 1만불 초과)
  - ②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은 사전신고 대상 (다만 신고 의무금액\*\*는 제외)
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9-39조, 제9-42조  
\*\* 외국환거래규정 제9-39조 제1항, 제9-42조 제1항

### ▷ 변경신고 대상\*

- ① 부동산 취득자금(국내 송금액/현지조달액/모기지론 등)이 변경
  - ② 신고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취득
  - ③ 취득한 부동산을 일부 매도하여 지분을 등 변경
  - ④ 단독(공동)명의로 신고하였으나 공동(단독)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등
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9-1조 제3항

### ▷ 사후보고 대상\*

- ① 해외부동산 취득/처분보고, ② 수시보고 등
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9-40조



### ▷ 유의사항

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처분대금을 회수할 필요

##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 설명서

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
해외직접투자, 부동산, 금전대차, 증권 거래에 대한  
핵심 유의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 
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### 금전대차 관련 핵심 유의사항

- ▷ **사전신고 대상\*** 거주자의 ①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및 ②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사전신고 대상(다만, 신고 예외거래\*\*는 제외)
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7-14조, 제7-15조, 제7-16조
  - \*\* 외국환거래규정 제7-13조

####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

유형	신고기관	
거주자의 외화차입	영리법인	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 (5천만불 이하)
		기획재정부 신고 (5천만불 초과)
	비영리법인/개인	한국은행 신고
거주자의 원화차입	10억원 이하 차입	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
	10억원 초과 차입	기획재정부 신고

####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\*

유형	신고기관
거주자의 외화대출	한국은행 신고
거주자의 원화대출	한국은행 신고

\*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 1년 미만의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자금지급 날로부터 매월 이내 보고

- ▷ **변경신고 대상\***  
대출기간/금리/상환방법/거래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
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7-4조 제1항

- ▷ **유의사항**  
금전대차를 사전신고하였더라도,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

### 증권거래 관련 핵심 유의사항

- ▷ **사전신고 대상\***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 증권양수도는 사전신고 대상(다만, 신고 예외거래\*\*는 제외)
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7-31조, 제7-32조
  - \*\* 외국환거래규정 제7-31조 제1항, 제7-32조 제1항

#### 증권거래 유형별 신고기관

양도인	양수인(신고자)	신고기관
비거주자	거주자	한국은행 신고
거주자	비거주자	외국환은행 신고 : 비상장·비등록 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
		한국은행 신고 : 그 외*의 경우

\*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

- ▷ **변경신고 대상\***
- ① 증권발행신고서의 금리/만기/상환방법 변경 관련
  - ② 증권취득신고서의 수량/액면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등
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7-4조 제1항

- ▷ **유의사항**  
거주자간 증권양수도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,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